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53 발의연월일: 2021. 9. 24.

발 의 자:김상훈·최연숙·이만희

김승수 · 서정숙 · 김예지

권성동・추경호・유경준

김희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임대사업자가 서울 일대에서 주택 524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사건이 발생함.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수익을 취하다가,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책임을 방기한 사건임.

이로 인해 수백가구의 가정이 피해를 입었음. 한 가구에서 전세보증금이란, 자산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임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,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, 임대인 1명이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돌려주지 못해 공사가 상당액을 대위변제하기도 함.

문제는,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음.

이에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

주고,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,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(안 제34조의5 신설). 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5(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)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임대인 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가. 임대인 등이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
- 나. 임대인 등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,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절차, 그 밖에 인적사항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인 등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적사항 공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횟수 또는 미반환 금액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5(보증금 미반환 임대인
	등의 인적사항 공개) ① 국토
	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
	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
	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
	할 수 있다. 다만, 임대인 등의
	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
	<u>지 아니하다.</u>
	가. 임대인 등이 전세보증금
	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
	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
	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
	<u> 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</u>
	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
	<u>경우</u>
	나. 임대인 등이 직전연도부
	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
	<u> 반환으로 「민사집행법」</u>
	에 따른 강제집행, 보전조
	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
	<u>Ŷ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

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, 기간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절차, 그밖에 인적사항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